

『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「물환경보전법」 제48조에 따라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 근거 및 위임범위를 규정하여 처리시설의 체계적·효율적 운영·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 운영· 관련 조항 신설(안 제4조~제4조의4)
- 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 주체를 “시장”으로 규정
: (현행) 소장 → (개정) 시장
-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23조의2)
- 처리시설 운영·관리 업무의 위임 범위 규정 (안 제3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1조, 제48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 주체를 ‘시장’으로 규정하고, 업무의 위임범위 등 위탁운영 관련 조항과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-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입주기업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탁 협약기간이 2020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, 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